

다음으로 서울特別市 公印條例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目次

1. 委員會回附條例(案)
2. 提案說明의 要旨
 - 가. 提案理由
 - 나. 主要骨子
3. 檢討意見
4. 參考事項

1. 委員會 回附 條例(案)
 - 提案日字：1991.12.18.
 - 提案者：서울特別市長
 - 委員會 回附日字：1991.12.19.

2. 提案說明의 要旨
 - 가. 提案理由
 - 事務管理規定【大統領令 第13390號('90. 6.19.)】및 同規程 施行規則【總理令 第 395號('91.9.30)】이 公布 施行케 됨에 따라 現行 “서울特別市官印規則”을 廢止 하고, “서울特別市公印條例”를 制定 施行함으로써 公印 管守 및 管理에 充實을 기하고자 함

- 나. 主要骨子
 - 公印의 備置 및 管守에 관한 基本原則을 定함(案 第2條 및 第3條)
 - 서울特別市長 職印：市民課長
 - 事業所長 職印：文書取扱部署의 長
 - 公印의 造刻, 種類, 規格, 登錄, 公告와 印影의 印刷 使用 等에 關한 細部事項 및 書式을 定함(案 第3條 乃至 第15條)
 - 規格, 印影의 內容, 公印의 材料, 찍는 位置에 關한 細部規程, 公印交付, 登錄, 再交付申請, 廢棄申告, 公告, 印影의 保存, 印影의 印刷 使用 等에 關한 細部規程
 - 書式制定：公印交付(再交付)申請, 公印臺帳, 印影臺帳, 公印印刷用紙管理臺帳, 公印事故報告書 等

3. 檢討意見

지금까지 서울特別市 및 그 傘下機關에서 使用하는 官印은 “서울特別市官印規則【規則 1956號(81.12.31)】”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備置 管守하여 왔으나 '91.6.19. 大統領令 第13390號로 事務管理規程이 制定 施行되고 同規程 第35條 乃至 第40條는 各級行政機關의 官印의 種類, 備置, 規格, 交付, 登錄 等에 關하여 規定하고, 同規程 第41條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印에 關하여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하도록 規定하여, 이에 根據하여 提案된 條例(案)으로서 現行 “서울特別市官印規則”에 比하여 새로이 公印의 種類(案第2號), 捺印位置(案第7條), 印影의 印刷 使用 規程(案第13條) 等を 두어 現實에 맞는 規程으로 思料됨.

4. 參考事項

- 關聯法規：事務管理規程(大統領令 第 13390號)
 - 第41條(公印)地方自治團體의 公印에 關하여는 이 章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 自治團體의 條例가 定하는 바에 依한다.
- 豫算措置：別途措置 必要없음.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鞠應好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도 끝났고 提案說明도 끝났습니다.

다음은 各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시고 該 當 機關에서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永鎬委員 委員長님!
- 委員長 鞠應好 質疑는 一問一答으로 이렇 게 하겠습니다. 뭐 깊은 內容이 없을테니까 質疑하시는 委員님에 대해서 執行機關에서는 바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李永鎬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永鎬委員 우선 專門委員이 檢討한 것에 대한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鞠應好 專門委員의 檢討案에 대해서 執行部側의 答辯을 들어 본다…….